

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명 “서울특별시학교용지부담금부과징수등에관한조례”를 “서울특별시 학교용지 부담금 등에 관한 조례”로 한다.

제1조 중 “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”을 “「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」”으로 한다.

제2조 및 제3조를 각각 삭제한다.

제4조제1항 중 “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5조의2의 규정에”를 “영 제5조의2의 규정에”로 한다.

제6조를 삭제한다.

별지 제1호 및 제2호 서식을 각각 삭제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## 신 · 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<u>학교용지확보에 관한 특례법</u>(이하 '법'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'영'이라 한다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><u>제2조(부과·징수 공고방법) ① 학교용지부담금(이하 '부담금'이라 한다)의 부과·징수에 관한 공고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1. <u>일간신문(중앙 또는 지방지)</u></li> <li>2. <u>건본주택이 설치되어 있는 장소</u></li> <li>3. <u>당해 조성택지 또는 주택건설지역 거주자가 쉽게 접할 수 있는 위치로 구청장의 승인을 득한 장소</u></li> </ol> <p><u>②제1항제2호 및 제3호에 의한 공고 기간은 30일로 한다.</u></p> <p><u>제3조(부과·징수공고의 절차) ①법 제2조제2호의 규정에 의한 개발사업(이하 '개발사업'이라 한다)계획의 승인권자는 개발사업시행자로부터 개발사업계획의</u></p>	<p>제1조(목적) 이 조례는 「<u>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</u>」(이하 '법'이라 한다) 및 동법시행령(이하 '영'이라 한다)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 <p style="text-align: center;"><u>&lt;삭 제&gt;</u></p>

(다음 페이지에 계속)

현 행	개 정 안
<p><u>승인신청, 토지공급계획승인신청 또는 입주자 모집계획승인신청을 받은 때에는 당해 계획에 학교용지부담금 부과·징수에 관한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었는지 확인한 후 승인하여야 한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<li><u>1. 부담금 부과대상자</u></li><li><u>2. 부담금의 산정기준 및 평형별 납부금액</u></li><li><u>3. 부담금의 강제징수에 관한 사항</u></li><li><u>4. 부담금의 납부기한 및 납부방법</u></li></ol> <p><u>②개발사업시행자는 토지 또는 공동주택의 분양공고를 하는 때에는 제1항 각호의 사항을 공고 및 분양안내서에 포함하여야 한다</u></p> <p>제4조(부과·징수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<u>법 제5조제2항 및 영 제5조의2의 규정에</u> 의하여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한다.</p> <p>② (생략) ③ (생략)</p>	<p>제4조(부과·징수 등) ① 서울특별시장(이하"시장"이라 한다)은 <u>영 제5조의2의 규정에</u> 의하여 부담금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을 준용한다.</p>

현 행	개 정 안
<p><u>제6조(과태료 부과·징수) ①시장은 법 제1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위반행위조사와 과태료처분대상자에게 영 제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진술의 기회를 부여하여야 한다. 이 경우 사전통지 절차는 행정절차법 제21조의 규정에 의한다.</u></p> <p><u>②시장은 과태료를 부과하고자 하는 때에는 지방세법시행규칙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납부고지서를 발부하고, 별지 제2호 서식에 의한 과태료 처분통지를 함께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고지서 발부일로부터 30일로 하며 이의신청 방법 및 절차를 명시하여야 한다.</u></p> <p><u>③영 제8조제3항에 의한 과태료의 처분기준은 다음 각호와 같다.</u></p> <o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<u>1. 300세대이상 500세대미만의 개발사업시행자 : 5백만원</u></li> <li><u>2. 500세대이상 1,000세대미만의 개발사업시행자 : 7백만원</u></li> <li><u>3. 1,000세대이상의 개발사업시행자 : 1천만원</u></li> </ol>	<p><u>&lt;삭 제&gt;</u></p>